

입법예고

고용노동부고시 일부개정(안)

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7호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고용노동부공고 제2017-199호 2017년 5월 15일

고용노동부고시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-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 및 평가절차를 합리화하고
- 우수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대하여 위험성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험성평가 절차 합리화(안 제6조 및 제10조)

-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(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)의 경우 3단계(파악된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)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
- 위험성 추정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위험성 결정 방법 규정

나. 사후심사 대상 확대(안 제19조)

-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에도 인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(10%→20%)하여 관리

다.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(안 제23조)

-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(30인 미만→50인 미만)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의2 